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1. 6. 8.(화) / 총 5매(본문4, 참고1)	
담당 부서	항공안전 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유경수, 사무관 강경범, 주무관 차시현 ·☎ (044) 201-4244, 4255, 4256	
	항공운항과	담 당 자	·과장 오성운, 사무관 이한복, 주무관 장여진 ·☎ (044) 201-4259, 4268, 4293	
보도일시		2021년 6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8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-9일부터 「항공안전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·시행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,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한 「항공안전법」 및 「항공안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항공안전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운항관리사도 피로관리 대상으로 추가]

- 그동안 조종사,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였다. 이를 통해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을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고자 한다.

- **운항관리사**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·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, **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**이다.
-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**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**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**최소 8시간의 휴식**을 부여하여야 한다.

<p>참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(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일 것 2. 연속되는 7일 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3.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
--

- 국내 대형 항공사인 **국제항공운송사업자**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**피로**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,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.

[자격증명시험 응시자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 보장]

-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, 코로나-19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.
-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.

[자격증명시험 환불기준 완화, 응시료 부담 경감]

- 불가피한 사유*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 (응시분야별 상이, 최대 127,000원)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하였다.

* 갑작스런 사고(직계가족 또는 본인의 사망 등), 질병의 발생 등

[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편의성 강화]

-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,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,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여 발급한다.



[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절차 간소화]

-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.
-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,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.
- 이와 함께,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,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 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 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,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이번에 개정된 「항공안전법」,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및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전문은 “국토교통부 누리집”(www.molit.go.kr) - 정책자료- 법령정보 및 법제처 “국가법령정보센터”(www.law.go.kr)에서 볼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255), 항공운항과 이한복 사무관(☎ 044-201-42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핵심 키워드별 개정 전후 비교**(법: **법**, 시행령: , 시행규칙:)

키워드	개정 전	개정 후
① 항공기내 흡연금지 법제57조의2 벌금 법제135조의2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(효력정지) 별표10	운항승무원, 객실승무원 : 항공사 운항규정 참고 승객 : 항공보안법	운항승무원, 객실승무원 : 항공안전법 참고 승객 : 항공보안법
	<신 설>	1천만원 이하
	<신 설>	운항중인 항공기 1차 : 60일 2차 : 120일 3차 : 180일
		주기중인 항공기 1차 : 30일 2차 : 60일 3차 : 90일
② 피로관리대상 범주 확대 법제56조 과징금 별표34 과태료 별표3	운항승무원, 객실승무원	운항승무원, 객실승무원, 운항관리사
	국제항공운송사업자 3억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6천만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3천만원 항공기사용사업자 8백만원	<동일기준 적용>
	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1차 : 250만원 2차 : 375만원 3차 : 500만원	<동일기준 적용>
③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제85조	시험시행기관에 의한 시험운영 중단시에도 기존 과목합격 유효기간(2년)만 인정	시험시행기관에 의한 시험운영 중단시 중단 기간만큼 과목합격 유효기간 자동연장
④ 환불 기준일 제321조제5항 당일환불 가능여부 제321조제5항	7일	5일
	불가	가능(사유해당시)
⑤ 자격증명 발급서식 별지 제38호	국문, 영문 별도 2종 발급	국, 영문 통합형 1종 발급
⑥ 항공 전문의사 지정절차 간소화 제105조제7항	기존 항공정전문의사가 소속의료기관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시 처리 절차 (1단계) 기존 지정취소 처분 → (2단계) 신규지정 신청	기존 항공정전문의사가 소속의료기관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시 처리 절차 (단일절차) 지정서 변경발급